

해외연수(복지) 장학금 제출서류 안내

제출 서류 목록

1

(필수)자가점검표

2

(필수)장학금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

3

(필수)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
4

(필수)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5

(필수)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6

(필수)출입국증명서 or E-ticket

7

(해당자에 한함)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

8

(해당자에 한함)세부 지원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

*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할 것

*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김 가능

1. 자가점검표

첨부(3. 2026-2학기 교환학생 해외연수(복지) 장학금 신청_제출서류 자가점검표) 제출

2.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

첨부(4. 2026-2학기 교환학생 해외연수(복지) 장학금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) 제출

* 자필서명 필수

3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
발급 기관	- 방문 신청 ·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교내 ECC 학생서비스센터 앞 발급기 - 인터넷 발급 신청 · 정부24(주민등록등본) 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)
발급 기준	- 본인 기준으로 발급 - 제출일 기준 <u>1개월 이내</u> 발급

* (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)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 한쪽만 표기되는 경우, 표기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관련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재산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)는 제출할 필요 없음

※상황별 제출 예시

상황	제출 서류(목록 내 모두 필수 제출)
부모가 부양자인 경우	① [주민등록등본] ② 학생 본인 명의 [가족관계증명서]
부모가 이혼한 경우	① [주민등록등본] ② 학생 본인 명의 [가족관계증명서] ③ 부모의 [혼인관계증명서]
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	① [주민등록등본] ② 학생 본인 명의 [가족관계증명서] (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)

* (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)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 한쪽만 표기되는 경우, 표기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관련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재산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)는 제출할 필요 없음

4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유의사항: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는 필수이며,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

발급 기관	- 인터넷 발급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- 팩스 발급: 건강보험관리공단(전화: 1577-1000)
발급 기준	- 부양자(부·모), 본인 각 1부 - 제출일 기준 <u>1개월 이내</u> 발급
발급 대상 항목	- <u>월별 건강보험료</u> 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)
발행 신청년월	- 1학기 파견: 전년도 - 2학기 파견: 당해 연도 1월 ~ 7월 (예시)2026-2학기 파견 학생인 경우, 2026년도 상반기(1월~7월)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*건강보험자격 확인(통보)서	- (필수)부·모 중 1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,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] 함께 제출
**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-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발급 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[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] 함께 제출 →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에 특정 기간에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1) 해당 기간에 이직하였거나 2) 부양자-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거나 3) 기간 내 납부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
*,** 두 서류 모두 제출 시, 조회 기간은 일치해야 함

※상황별 제출 예시

순번	상황별 예시	제출 서류(목록 내 모두 필수 제출)
1	부·모, (본인)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	부·모·(본인)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2	부·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	① 부양자(납부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부양자(납부자)의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까지 총 2부 제출 * ② 제출 시 피부양자 이름 명시 필수
3	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특정 기간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	① (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② 납부내역이 없는 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해당기간동안 부양자(납부자)의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
4	조부모·형제자매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	① 부양자(납부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부양자(납부자)의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③ 피부양자(본인 및 부모)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5	학생 본인이 기혼인 경우	① 가입자(본인 혹은 배우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부양자(납부자)의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③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6	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	세대주(부양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, 세대원(피부양자) 명의로도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, 이 경우 건강보험증 번호와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함(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(급여개시유효일) 확인 필요)

*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고, 이 경우 수급자 구분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체크되어 있어야 함

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납부액이 0원이어도 필수 제출)

발급 대상 항목	- 재산세 중 <u>건축물, 토지, 주택</u>에 한함(주민세, 교육세, 자동차세는 해당 없음) ※ 반드시 <u>재산세(건축물), 재산세(토지), 재산세(주택)</u>만 표기되도록 발급할 것
발급 기관	- 인터넷 발급: 위택스 - 주민센터 및 구청 창구 발급(방문 발급): 구청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※ 구비 서류 등 세부 안내 참고: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※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
발급 기준	- <u>부양자 및 본인 각 1부씩 (반드시 본인 서류 포함 제출)</u> - 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, 본인과 배우자 각 1부씩 제출 - 제출일 기준 <u>1개월 이내</u> 발급
과세년도	- 전년도 (예) 2026-2학기 파견 학생의 경우,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
대상 지역	- 전국 자치단체
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	- 부양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, <u>전국 단위 “과세 사실 없음” 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제출</u> - 인터넷 발급 신청 가능: 위택스 · 부양자(부/모) 각각 본인인증 및 로그인 → “납부/납부결과” 선택 → “증명서 발급” 항목에서 “세목별 과세증명서” 선택 → 검색 설정: 관할자치단체 “전체” / 과세년도 입력 / 세부 항목 “토지, 주택, 건축물” → 부수, 사용목적 등 기입 후 발급 신청 * 단, 전국 어느 1개 지역에서라도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, 온라인 발급 불가 →(가까운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)

※상황별 제출 예시

* 제출 대상: 재산세 중 건축물, 토지, 주택에 한함(주민세, 교육세, 자동차세는 해당사항 없음)

[지방세 제출 규칙]

가. 전국 미과세: 전국 단위 미과세증명서 1부

나. 과세 내역 있음

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해당 시·도 내 미과세증명서 ③ 해당 시·도 외 전국 미과세증명서

다. 주의사항

특정 지역을 제외한 '미과세'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**온라인 발급 불가**

(예시) 서울의 한 자치구에는 과세 이력이 있지만, 나머지 서울 지역이나 전국에서는 미과세라는 식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

▶과세가 있는 사람마다 3종 세트, 과세가 없는 사람은 1종

[제출 서류 예시]

순번	대상		제출서류
1	부	서울 마포구 과세	(마포구에 대한) ① (마포구 제외한 서울 다른 내 지역) ② (서울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) ③
2	모	부산 남구 과세	(부산남구에 대한) ① (부산남구 제외한 부산 내 다른 지역에 대한) ② (부산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에 대한) ③
3	본인	전국 미과세	전국 단위 미과세증명서 1부
4		경기 고양시 과세	(고양시에 대한) ① (고양시 제외한 경기 다른 내 지역에 대한) ② (경기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) ③

*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해당 시·도 내 미과세증명서 ③ 해당 시·도 외 전국 미과세증명서

6. 출입국증명서(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)

- 가. 유의사항: 출입국증명서 미제출 시, 장학금 미지급 및 기 지급된 경우에는 회수
 나. 출국 전에는 e-ticket 제출 가능하나, 출국 후 **출입국증명서 제출 필수**
 - 제출 방법: 국제교류팀(oia@ewha.ac.kr) 이메일 제출

7.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(해당자에 한함)

발급 기관	- 인터넷 발급 신청: 한국장학재단 · 장학금(증명서)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선택 → 파견학기에 대한 통지서 발급 - 방문 발급 신청: 구청(세무부서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발급 기준	-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발급 및 제출 - 미제출 시 8분위 이상으로 간주하여 소득분위에 대한 점수 없음

8. 세부 지원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가. 장학금 신청서에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항목 등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경우, 해당 증빙 서류 제출 필수

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항목	항목별 증빙자료
㉠ 독립유공자의 직계(손)자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호(순국선열)와 제2호(애국지사)에 해당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㉡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에 해당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㉢ 고엽제 후유증 수당지급 대상자 자녀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고엽제 후유증 수당지급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㉣ 5·18 민주유공자 자녀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5·18 민주유공자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㉤ 장애등급 1~3급 해당자의 자녀	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㉥ 다문화가정 자녀	가족관계증명서, 부/모의 외국인 등록증
기타(부채 등)	내용증빙이 가능한 서류 (부채증명서의 경우, 금융기관 발행 서류에 한함)